

『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「하수도법」 제26조제3항에 의거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함으로서, 중수도 사용률 제고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
(안 제41조제1항제3호)

4. 참고사항

- 「하수도법」 제26조제3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제1항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하수도법」 제26조제3항에 의거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하여 중수도 사용률 제고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
(안 제41조제1항제3호)

○ 검토 결과

- 「하수도법」 제26조제3항에 의거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하는 규정 신설로 중수도 사용률 제고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 안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타시군보다 수도요금의 파격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도시 이미지제고와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